

인천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5279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곡

담당변호사 임영준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영준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7. 14.

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18664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1. 24.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167,306,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306,000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와 C가 혼인관계에 있던 중 취득한 공동재산이므로,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는 C이고, C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C는 2016. 11. 24.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재산분할약정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인 아래 ① 내지 ③을 합한 167,306,000원(= 47,306,000원 + 55,000,000원 +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가 337,333,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 17,333,000원과 임대차보증금 수령 후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77,279,827원 중 C 소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47,306,000원[= (17,333,000원 + 77,279,827원) × 1/2]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가 110,000,000원 중 C 소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55,000,000원

③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인근 유사 건물 실거래가 247,480,000원에서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대지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110,000,000원을 제외한 약 130,000,000원 중 C 소유 지분인 1/2에

해당하는 65,000,000원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피고가 혼인 중 피고 단독 명의로 취득한 피고의 특유재산이고, 이 사건 제3 부동산은 혼인관계 종료 후 피고가 신축하여 취득한 피고의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피고의 단독 재산이고, C의 재산이 아니다.

한편 피고는 C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3,400만 원을 피고가, 4,300만 원을 C가 각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3)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 10, 11, 14, 1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김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이 C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6. 11. 24.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위 부동산의 취득 당시 C가 그 매매대금을 출연하였다는 등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 또한 피고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C의 소득 유무 및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C와의 협의이혼에 이르기 불과 10일 전이고, 피고는 협의이혼 이후 2016. 11. 27. 이 사건 제1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며,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지상에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신축하고, 2016. 12.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의이혼 이후 단독으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급여, 퇴직금,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의 몫인 3,400만 원 등을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제3 부동산의 경우, 피고는 C와의 협의이혼 이후인 2016. 12. 2. 단독으로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2017. 5. 22.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자로서 등록을 마쳤는바, 피고는 피고의 급여, 퇴직금,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중 피고의 몫인 3,400만 원 등을 자금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난 후 피고가 3,400만 원을, C가 약 4,300만 원을 각 취득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위 주장을 위와 같은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가 피고와의 30여년간 혼인생활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유지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는 혼인기간 중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에 금전적으로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가액은 94,612,828원(= 2016년경 시가 337,300,000원 -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채무 및 비용 합계 242,720,173원1))인데, C는 그 중 45%에 달하는 약 4,300만 원을 취득한 점, ③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와 자금의 출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범진, 판사 김    현

1)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리금 240,971,423원 + 중개수수료  
1,200,000원 + 승강기이용비 50,000원 + 관리비 448,750원 + 근저당권 말소 비용 50,000원